

##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 유 진  
(경북대학교)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학대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심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피학대 노인 14명과의 심층면담, 사례기록 및 연구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네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오랜 폭력의 역사에 의해 착취와 단절이 만연한 가족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② 폭력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고 곳곳이 버터 나감, ③ 반복적 학대 발생과 재신고 주기를 겪고 있음, ④ 외부 개입은 심정적 의지가 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주요용어: 노인학대, 노인학대 재발생, 노인학대 재신고, 질적 연구, 중심주제분석

■ 투고일: 2015.4.30    ■ 수정일: 2015.6.8    ■ 게재확정일: 2015.6.18

## I. 서론

최근 노인학대 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3년 노인 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 되어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3,520건으로서 십년 전의 수치와 비교할 때 약 19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실제 신고 건수는 학대 발생의 1-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Bonnie & Wallace, 2003; Teaster et al., 2003).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단 학대 발생률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학대에 노출될수록 우울과 불안, 자살생각이 높아지고 삶의 질은 낮아지며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다(서인균·고민석, 2011; Anetzberger, 2005; Payne, 2002).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2014년 6월 기준 전국 2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에게 행해지는 학대와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에 따른 부정적인 피해 결과를 경감하기 위한 개입들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있는 후에도 어떤 노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많은 피해대 노인들의 사례가 학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뉴질랜드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APS)에 의뢰된 사례들 중 학대가 소결되어 종결되는 사례는 신고·접수된 사례의 58-7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Wolf & Pillemer, 2000). 실무자들에 의하면 학대 사례가 신고·접수 된 후에도 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노인들이 개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한혜경, 2006; Alon & Berg-Warman, 2014; Killick & Taylor, 2009; Wolf & Pillemer, 2000). 그 밖에도 학대가 발생하는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행위자가 학대에 따른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학대 재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lon & Berg-Warman, 2014; Jackson & Hafemeister, 2013; Killick & Taylor, 2009).

노인들은 학대를 숨기려고 하거나, 제3자에게 학대를 부정하고, 신고를 꺼려하며, 공적 체계 개입을 저절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정미, 2010; Aciero, 2003; Mukherjee, 2011). 특히, 한국계 노인들은 다른 인종의 노인들보다 학대 발생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더 높고,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속앓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기련 외, 2006, p.405; Lee et al., 2014). 피해노인들은 행위자의 안녕을 걱정하며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 피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되기도 한다(Klein et al., 200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노인들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장벽으로 여겨진다(Harbison et al., 2012).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피해노인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학대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마치 이들은 학대를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보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피학대 노인을 학대로 고통 받고 있으나 변화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보는 것으로서, 노인의 경험 세계를 간과하는 것이다(O'Brien et al., 2011). 노인학대 연구에서 정작 노인들의 실제 삶의 경험을 들여보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우국희, 2002; Erlingsson, 2007).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노인의 경험 중에서도 반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이들의 실제적 반응과 바람 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복적인 학대 발생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지속되는 현상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학대 노인들의 내부자적 시각을 이해하며, 노인 당사자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개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대 경험에 대해 노인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는데 필요한 일이다(Hightower et al.,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개입 후에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특정 맥락적 상황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생 및 재신고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을 다분히 병리적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노인학대 현상을 전체적으로(holistic) 이해하면서 노인의 강점을 살려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의 반복적인 피학대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경험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노인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들이 원하는 도움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고찰

### 1. 노인학대 개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및 개입 접근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4호). 세계보건기구(WHO/INPEA, 2002)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정의가 노인학대의 복잡한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어떤 특정 학대 행동의 발생에 따라 노인학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발견하고 찾아내며 분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현재의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흑백으로 분리해서 보게 하고, 학대가 발생하는 맥락과 복잡한 관계적인 속성을 고려하기는 어렵게 한다(Anetzberger, 2005).

노인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학대 상황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데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미국의 성인보호서비스 기능과 유사한 우리나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학대 신고·접수, 피해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oe et al., 2009). 현실의 실천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개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한혜경, 2006). 노인학대 정의와 그에 따른 관련 법에 따르면 학대는 일종의 불법적 행동이고 범죄행위이지만, 부양부담에 지쳐있는 학대행위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없잖아 깔려 있기 때문이다(Hightower et al., 2006). 아주 명확한 가시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 기소를 위해 피해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음주문제나 정신질환에 의한 폭력적 행위에 대한 개입도 가해자가 그런 개입을 받아들일 때나 가능한 실정이다(Bergeron, 2002). 노인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고, 피해상황에 머무는 것도 자신의 선택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강제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Bergeron, 2006).

노인학대 위험요인을 파악한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피해자는 주로 75세 이상의 여성 독거 미망인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신체적·경제적으로 타인에 의존적이며, 스스로를 학대 원인 제공자라고 책망하는 성향을 보인다. 한편, 학대 행위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 가족원인 성인자녀나 배우자로서, 부양 스트레스가 심하며,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에 의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를 가졌으며, 피해노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보선, 2005; 송영민, 2003; 조애저, 2008; Bonnie & Wallace, 2003; Teaster, 2003). 노인학대 전문가들은 피해노인을 의존적이며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며, 학대행위자는 부양부담에 지친 케어기버이거나 힘없는 노인에게 기생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노인학대 개입의 수준은 보통 개인 또는 가족의 차원으로 제한되며, 단편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한다(Nerenberg, 2007). 현 노인학대를 접근하는 방식에는 노인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은 노인의 취약함과 의존성 등의 측면에서 찾고 있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서는 노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생애 주기상의 폭력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의 책임은 보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Dow & Joosten, 2012; Norris et al., 2013).

## 2.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노인 대상 피학대 경험에 대한 심층 연구는 주로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남녀 노인 모두 학대에 노출되지만 여성 노인의 학대 위험이 더 높으며(Norris & Fancey, 2008), 대다수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연구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은 관계로(Lachs & Berman, 2011), 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여섯 명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학대 받는 여성 노인들의 경험의 중심현상은 무시당함과 힘을 잃음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학대 노인은 분하고 억울함을 느끼는데 그 밑바탕에는 한(恨)이 깔려 있다(김영경 외, 2004). 노인학대를 겪고 있다고 인정한 노인을 대상으로 눈덩이식 표집에 의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대 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을 탐색하였다(김기련 외, 2006). 이들 연구진에 의하면 노인들은 학대 상황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며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참고 견뎌내며 속앓이를 한다. 학대 행위자에게 대응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 내거나 자신보다는 가족 전체의 화목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속앓이를 하는 것이다(김기련 외, 2006).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피학대 노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여성노인의 학대 경험을 들여다 본 연구도 진행되었다. 양로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포함한 21명 노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의존성의 관계적 변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보여 주고 있다(송영민, 2003). 노인학대와 관련된 의존성 변화는 상호독립에서 의존으로의 변화, 의존에서 자녀의 역의존으로의 변화, 상호의존에서 의존으로의 변화 등 의존성의 관계적 변화 속에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규범에 따라 여성노인의 의사결정이 남편 사후 아들에 의한 주도로 바뀌고 자녀의 역의존이 겹치면서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피학대 노인을 연구 참여자로 한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특정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노인의 학대는 일상에 걸쳐 누적되어온 결과라는 문제 인식에 따라 성인지적 시각을 바탕으로 노인 학대를 접근하거나, 세대 간 폭력의 전수에 따른 노인학대를 분석한 것이 그 예이다(김지아, 2004; 이현주, 2013).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여덟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빈곤, 폭력, 의존 등 열악한 생활을 살 수 밖에 없는 여성노인들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피해자이고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다(김지아, 2004).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와 사례 담당 상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력이 세대간 전수된 경우일수록 신체적 학대가 정도 심하고 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이현주, 2013).

우리나라 노인학대 연구에서는 주로 세대간 학대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반면, 서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노부부간 폭력의 경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학대 여성 노인의 경험을 여성주의적 시각과 연령차별주의적 접근에서 해석하고 있다. 여성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가정 내 폭력에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공평한 힘의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Walsh et al., 2007). 많은 피학대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은 오래 전부터 일상적인 일로 벌어져 왔던 만큼, 이들은 학대를 견딜 만한 것으로 스스로 세뇌하면서 가정주부이자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삶을 살아왔다. 페미니즘에 의하면, 이들의 이러한 대처방식, 즉 가정의 안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여성에게 특히 반역압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따르도록 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Zink et al., 2003). 오래된 가정폭력의 역사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아예 가족을 등지거나, 어릴 적 불행을 노모 탓으로 돌리며 폭력적이 되거나, 부친의 바통을 이어받아 나이든 노모를 학대하는 행위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Finfgeld-Connett, 2013; Hightower et al., 2006). 가정폭력은 힘과 컨트롤의 문제이며, 종종 학습된 행동으로서 세대 간에 전수되고 있고,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Zink 외(2003)는 피학대 여성노인들이 폭력적인 관계에 머무는 이유를 시대의 영향과 노화의 영향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대의 영향이란 동시대 집단의 경험과 가치, 태도가 피학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노인 세대는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며,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 왔기에, 폭력적인 행위를 참아내고 학대적 관계에 남아서 가족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Anetzberger, 2005). 가정폭력 또는 노인학대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거론되지 않던 시대를 살다보니 학대를 받는다는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다. 피학대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기를 오래도록 지내오면서 점차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자신에 익숙해진 것이다. 피학대 여성노인들이 자란 시기는 여성에게 교육과 자립을 가르치지 않았던 만큼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직업 기술이 부족한 이들은 폭력에 순응하는 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노화의 영향이란 나이 들면서 건강과 활력이 약해지고 폭력적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이유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Zink et al., 2003). 나이 들수록 버려지거나 방임될 두려움이 커지고, 그것은 실질적인 학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Riddell et al., 2009). 오랜 학대로 인해 자존감이 부족한데다가 고독과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은 폭력적인 관계를 끝맺는 것이 오히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Spangler & Brandl, 2007).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겪어 온 여성 노인들은 모두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그 오랜 세월동안 학대를 견뎌온 것일까? 학대행위자를 떠나지 않고 오랜 폭력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는 고령의 여성들은 자기 나름의 생존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삶의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폭력적인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고, 가족 내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Zink et al., 2003; 2008). 모든 피학대 노인들의 대처방식이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폭력을 겪으면서 우울이 심해지고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붕괴되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Lazenbatt et al., 2013).

공적 개입에 대한 피학대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피학대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해도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 지 모르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 아니라 행위자를 화나게 해서 학대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시설 입소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Lafferty et al., 2013; Mowlam et al., 2007). 노인들이 도움과 지지를 구하거나 공적 개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하고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피학대 노인의 학대 경험이 어떠한지에 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개입 후에도 노인학대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개입에 대한 노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OO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친 후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2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기관의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한 사례 77건을 추천받았고,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층 면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① 현재 심각한 인격장애 또는 인지장애를 겪고 있지 않고, ②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심층 면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77 사례 중에서 심층 면담에 참여 의사를 보인 경우는 31건 이었는데, 중간에 노인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15명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방임 피해자로 등록된 한 명의 남성 참여자와의 면담을 제외한 14명과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방임은 피학대 노인의 특성, 학대 위험요인 및 개입 방법이 그 밖의 학대 유형과 상이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Anetzberger, 2005).

14명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는 3명, 여자는 11명이 참여 하였는데, 이 중에서 부부도 세 쌍이 있었다. 이들 나이는 63세에서 89세로 평균 연령은 74.9세이다. 14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두 번 이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경우이며, 다섯 번 신고·접수된 경우도 한 건 있었다. 두 명을 제외한 12명의 참여자들은 중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었는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다섯 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로 신고 된 경우도 일곱 건이 있었다. 단일 학대로 신고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였다.

이들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면, 각각 배우자와 손자에 의한 학대가 한 건씩 있으며, 나머지 12건은 아들에 의한 학대 발생이었다. 14명의 참여자들 중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직접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일곱 명이 있었다.

이들의 거주와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14명의 참여자 모두 가족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도 여덟 건이 있었는데, 면담 당시 세 명의 행위자는 각각 구속 수감, 알코올병원 입원, 정신병원 입원 중에 있었다. 고령의

참여자들이지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세 명을 제외하고는 자립적인 일상을 꾸리고 있었다.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참여자들은 뇌경색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76세의 여성, 중풍으로 삼십년 째 반신불수의 상태인 78세 남성과 그의 배우자인 73세 여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이후 어지럼이 심한 경우였다. <표 1>은 심층 면담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번호는 편의상 부여한 것이다.

표 1. 심층 면담 참여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참여자	행위자	학대유형	동거 가족원	신고(신규/재신고)	
1	66세 남	36세 아들	신체·정서	배우자, 아들(행위자)	본인/본인
2	63세 여	36세 아들	정서	배우자, 아들(행위자)	배우자/배우자
3	89세 여	49세 아들	신체·정서·경제	아들(행위자), 손자	여성긴급상담/ 사회복지관
4	76세 여	58세 아들	신체·정서	아들(행위자·구속 수감 중)	경찰/경찰
5	79세 남	49세 아들	신체·정서	배우자, 손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6	75세 여	49세 아들	정서	배우자, 손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7	67세 여	35세 아들	신체·정서·경제	아들(행위자)	본인/본인
8	72세 여	48세 아들	신체·정서	손녀들, 아들 (행위자·알코올병원 입원 중)	경찰/본인
9	73세 여	48세 아들	신체·정서·경제	배우자, 손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
10	78세 남	48세 아들	신체·정서·경제	배우자, 손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우자
11	72세 여	21세 손자	신체·정서·경제	손자(행위자)	주민센터/본인
12	75세 여	56세 아들	신체·정서·경제	손녀와 세입자	아웃/본인
13	81세 여	81세 배우자	신체·정서	배우자(행위자)	여성의 전화 다섯 차례 신고접수
14	82세 여	56세 아들 25세 손자	신체·정서·경제	아들(행위자, 정신병원 입원 중), 손자(행위자)	읍사무소/본인

주: • 각각 1번과 2번, 5번과 6번, 9번과 10번 참여자는 부부관계이다.  
• 신규 신고 시와 재신고 시에 접수된 학대유형이 동일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해 재차 설명한 후 노인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2014년 7월 7일부터 9월 2일에 걸쳐 진행된 각각의 개별 면담은 참여자의 선택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참여자의 자택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반복적인 학대 발생과 그에 따른 신고 과정,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MP3에 녹음되었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Braun과 Clarke(2006)식의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및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중심주제분석은 특정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거이론 또는 현상학적 방법 등과 달리, 인식론적 입장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분석방법을 갖추고 있다. 귀납적 탐구방법으로서 주제분석방법은 주요 패턴에 관해 기술하며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질적 자료분석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녹취한 원자료(raw data)와 현장노트이며, A4 용지 240장(휴먼명조, 글자크기 10)이다. 본격적인 분석은 여러 번 자료를 읽으며 의미를 가진 잠재적인 코드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코드들 간을 비교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면담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각 참여자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사례 내 분석(within case analysis)’을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참여자의 생애사, 학대가 발생한 배경, 피해노인과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노인, 행위자, 그리고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 가족의 학대 상황에 대한 반응과 대응, 신규 신고 및 재신고하게 된 계기,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피해 노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코딩 작업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해석이 시작되었다. 일단 코드들 간의 연관성이 발견되면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중심주제(theme)라고 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내부자적 주제(emic theme)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표 2>에서 정리한 것처럼 네 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중심주제들의 내적 동질성과 외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한편(Patton, 1990), 새로운 코드나 범주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이해하게 된 내부자적 관점을 외부자적 분석(etic

analysis)으로 보여주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Braun과 Clarke(2006)의 권고에 따라 각각의 중심주제는 무슨 의미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이 그것을 만들어 냈으며, 참여자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인 면에 대한 고려

#### 가. 연구의 엄격성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는 신뢰성이라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연구의 진실성(credibility), 양도성(transferability) 또는 연구결과와 해석의 적합성(fittingness of findings and interpretation)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멤버확인(member-checking, 면담 말미에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작업), 자료의 삼각화(노인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자료 외에 담당 실무자와의 면담 자료, 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사례기록지, 그리고 연구자 현장노트 활용), 그리고 동료심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자, 미학 전공자, 그리고 노인 심리학자와의 동료심사를 통해 편견에 빠지지 않고 분석 과정과 결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감사가능성을 높이고 연구가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나. 연구의 윤리적인 면에 대한 고려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심사(IRB)를 완료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 활용 및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의 참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권리와 제한적 비밀보장을 약속하며, 필요한 경우(자살위기 또는 학대의 징후 등이 감지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공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심리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IV. 결과

Anetzberger(2005)가 언급한 것처럼, 노인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대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학대 노인들이 털어 놓는 경험 실재를 보면 특정한 공통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개의 중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적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원하는 도움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심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녹취록에서 발췌하였다.

표 2. 사회적 개입 후에도 반복적인 학대를 겪는 피학대 노인의 학대 경험 및 개입 경험

중심주제	하위범주
오랜 폭력의 역사에 의해 착취와 단절이 만연한 가족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오랜 세월에 걸쳐 폭력을 겪고 있음
	노화 진행될수록 폭력 상대하기는 더욱 벅차짐
	여러 명의 가족원들로부터 폭력과 착취를 당하기도 함
	오래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지침과 회피, 단절된 가족 관계를 갖고 있음
폭력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고 곳곳이 버티 나감	행위자 뒤치다꺼리를 하든 행위자와 맞서 싸우든 폭력을 잠잠케 하는 대처 방식을 구사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의미를 찾거나 애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며 곳곳이 버티고자 함
반복적 학대 발생과 재신고 주기를 겪고 있음	개입 기간 동안은 폭력이 잠잠한 시기를 보냄
	위기 상황 지나면서 자의반 타의반 개입은 종결됨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재발생에 따라 재신고 이루어짐
	학대 재발생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
외부 개입은 심정적 의지가 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	과거와 달리 가정 내 폭력에 관심을 갖는 외부 개입이 어색하지만 심정적 의지가 됨
	행위자에 대한 걱정과 현실적 문제로 인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함
	폭력 근절과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크게 기대하지 않음
	외부 개입에 구체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답답함과 불만을 갖고 있음

## 1. 오랜 폭력의 역사에 의해 착취와 단절이 만연한 가족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노인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학대는 근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학대가 아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 지층을 이룬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폭력이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상호작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의 특정한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묵혀왔던, 또는 계속 지속되어온 문제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오랜 세월 폭력적인 관계가 일상이 된 삶을 살아온 피해 노인들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폭력에 많이 무뎠지만 후유증은 더 심하게 겪는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학대 행위자들은 경제적인 필요 뿐 아니라 일상의 많은 것을 피해 노인에게 기대고 있다. 행위자들은 실직 또는 무직, 사고와 질병, 이혼 또는 미혼인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 주로 학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린다고 한다. 아들이 행위자인 경우 미혼 상태의 두 명을 제외한 열 명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파탄 후 원가족으로 복귀 하였는데, 경제적 착취를 통해 술을 마시고, 알코올의 힘을 빌려 폭력을 행사한다. 배우자가 행위자로 등록된 참여자는 지난 육십 년간 배우자의 의처증에 의해 폭력을 받아왔었는데, 최근 배우자가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폭행이 더욱 잦아지고 있었다.

폭력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적으로 스며있는 참여자들의 가정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것처럼, 한 명의 피해자와 한 명의 행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한 명일지라도 여러 명의 가족원이 갈등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참여 노인에게는 주된 가해자들 못지않게 착취를 일삼는 이차적인 행위자들이 있다. 주로 두 명 이상의 아들을 둔 경우, 아들과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아들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는 일곱 명의 여성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을 겪었다고 한다. 생애시기별로 주된 행위자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들은 과거에는 남편에 의해, 현재는 아들에 의해, 또한 손자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 폭력과 착취 행동이 적절한 제지 없이 한 세대 내에서,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학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 노인들에 의하면, 가족원들 전체가 대부분 지쳐있다. 다른 가족원들도 행위자를 무서워하고 피하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여하지 않는다.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피학대 노인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일에도 소극적이다. 오랜 폭력의 역사는 가족 간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의 역사이다. 실질적 행위자 이외에도 다른 가족원들의 감정 상태에 의해 학대 상황 유지가 관찰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참여자들도 폭력적 문제해결 방식에 익숙해짐에 따라 가정 내 학대가 세대를 이어서 지속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할아버지(남편)랑 많이 싸웠었어. 매도 많이 맞고 애들 앞에서도 마구 때렸어. 그걸 보고 자랐지. 큰 아들(행위자)이 그러더라고. 지가 지 아빠 따라하는 거래. 그래서 지 부인은 나갔잖아(72세 여성).

젊을 땐 그래도 어찌 버텼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 아(손자)한테 고함질러도 바지에 오줌 싸고 많이 놀래구 살아서. 기운 없어가지고 고함지를 힘두 없어요. 밖에서 부시력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마음이 항상 불안해(82세 여성).

내 생일날 모였을 때 작은 아들이 돈을 좀 해달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개도 나한테 의지를 하더라고. 그걸 큰 아들이 듣고는 자들이 투닥투닥 하더니 큰 아들이 갑자기 칼을 가지고 작은 아들을 찔러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냥 작은 애만 붙들고 정신이 나가까지구(75세 여성).

둘째 아들이 전세자금에 들어있는 내 통장을 가져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내가 그 때 아파 누워 있을 땐데. 며느리도 한 번도 안 오고 나중에 들으니까 술 마시고 못 살게 해서 이혼 했다고 하든데. 작은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아들은 나한테 욕 안해. 장남(행위자)이야 직업군인으로 있을 때부터 속을 무진장 썩였지만(73세 여성).

식구들이 다 깊은 잠을 못 자요. 아들한테 공포에 막 떨어져. 낮이건 밤이건 가(아들)가 있으면 모두 피해 다니는 거여. 어느 때 와서 또 그 야단을 칠라는지 몰라서 불안하고 (79세 남성).

동생들이 지 형(행위자)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술 취해서 항상 그런다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아들들한테 피해 갈까봐 어떻게 못해요. 작은 아들이 내가 이렇게 되니까 말로는 서울 자기네 집에 와서 당분간 쉬라고 하는데. 며느리한테 볼 낫도 없고 안 가는 거지(76세 여성).

## 2. 폭력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고 곳곳이 베타 나감

자신의 상황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참여자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14명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한 명의 남성을 포함한 열 명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폭력적인 아들과 손자, 또는 배우자에게 관용적이다. 특히 여성 노인들이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아들 또는 배우자가 화풀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피학대 노인들은 아들과 손자, 또는 배우자가 일부러 또는 나쁜 사람이라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안 풀려서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피학대 노인들은 폭력이 휩쓸고 간 뒷수습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심지어는 자신이 학대를 겪은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또는 판사에게 학대 신고를 없애 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을 한다. 차마 자식이 처벌받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풀이하는 학대행위자가 의지할 데라고는 자기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랜 시간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폭력적인 장면을 가능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행위자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거나,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 집이지만 행위자 아들을 피해 자기 집에서 대피하기도 한다. 이들의 그러한 태도가 학대의 문제를 더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피학대 노인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퍼주고,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동안 폭력은 되풀이된다. 학대 행위자들이 더욱 더 피해노인에게 의존적이게끔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반면,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네 명이 있었다.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고 여기는 참여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 행위자가 행패를 부리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보는 이들은 분한 감정을 갖고 있고, 행위자에게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행위자와 맞서 싸우고, 계속 부딪친다. 자신을 다시 한 번 건드리면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에게 신고한다고 행위자를 으바지르기도 한다. 네 명의 참여자들이 행위자에게 품고 있는 주된 감정이 분함과 미움, 억울함이지만, 이들도 행위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양감감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참여 노인들은 소극적이진 않다. 이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폭발적인 폭력을 잠잠하게 하는 대처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참여 노인들은 무기력하거나, 깊은 우울로 축 쳐져 있거나,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가부간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비록 그것이 타인의 눈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해서든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

내가 도망 나가부려. 아들 밥 먹을 거 해 놓고 밖으로 나가부려. 기방 짊어지고 나가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제. 같이 있으면 그냥 하도 불안해서 죽겠고 그러디다. 아침에 밖에 나와서 괜히 왔다갔다 하다가 저녁에 아들 잘 때 쯤 들어가고 피하려고(67세 여성).

술 마시구 들이 닥쳐서는 주먹질을 할라 그래. “때려라 때려. 난 너한테 맞을 준비 됐다. 핸드폰만 누르면 경찰한테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뭘 증거가 있어야 한데. 무슨 증거냐. 세상에 무슨 증거가 필요 있습니까? 부모한테 학대하는 놈인데(73세 여성).

내가 몇 번 자살하려고도 했었어. 근데 손녀들 어떡해. 내가 없었으면 진짜 나쁘게 되야 부려. 내가 없으면 저런 아빠하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 하나 반길 사람 없고 내가 책임이 막중혀. 저것들 시집도 보내야 하는디(79세 여성).

살아야지. 나쁜 마음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해하려고 생각도 많이 해 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잘 못 산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OO(손자)도 잘 크고 딸들도 잘 살고 있으니 위안 삼을 것도 있고(75세 여성).

### 3. 반복적 학대 발생과 재신고 주기를 겪고 있음

최초로 이루어진 학대신고는 대부분 피해노인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이 심각해졌을 때 이루어졌다. 피해노인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에서 더 이상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신고를 하게 된다. 마치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자를 대하는 것을 알게 된 행위자들은 외부 개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하면서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학대행위자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여에 의식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노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서 물건을 부수는 것으로 대신한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행위자 발길이 뜸해지면서 갈등 상황이 소멸되기도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기간에는 거의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대 휴지기 또는

중단기에 들어선 것이다. 폭력이 잠잠해지면 대부분 피학대 참여노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긴다. 위기개입을 표방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특성 상 위기 상황이 잠잠해지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례는 종결하게 된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폭력이 잠잠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행위자들이 자기 뜻을 표현하는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못하게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폭력이 거세지면 위기를 느끼지만 폭력 소강 상태에서는 문제를 들추지 않고 덮어 둔다. 그에 따라 행위자들은 폭력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악순환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후회와 자책을 하지만, 그동안 고착화된 참여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참여자의 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도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다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이 다시 발생한다. 학대휴지기에도 자살한 폭력들은 있었다. 노인들은 신고를 할 정도의 큰 폭력이 아니어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겼다고 한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행위자들 잠잠하지만, 한 밤에 밀폐된 공간에서 폭력은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 밤에, 또는 새벽에 심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학대 노인 본인에 의해 또는 주변에서 학대 재신고를 한다. 피학대 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 쉼터 입소, 입원 치료 등이 진행된다. 드물게 행위자 구속 또는 행위자 알코올 병원 입소 등으로 피학대 노인과 피학대 노인의 분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 폭력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피학대 노인도, 행위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재학대 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이라 말을 차마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니깐, 이거이 막 이렇게 막 갈수록 심해지대요. 목 끄덩이도 막 잡아 불고 발로 차고. 예휴 인자 안 되겠다. 이제 신고 해야겠다. 너무 무서우니깐 112로 전화했어요(67세 여성).

여러 군데(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서 와서 막 들여다보고 하니깐 지(학대행위자)도 주춤하는 게 있지. 한동안 행패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살 만하지. 선생님(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자 지칭)도 더 안 와도 되고(89세 여성).

경찰들이 오고 여기(노인보호전문기관)서도 지구대에서도 오고 자꾸 그러니까 때리는 건 안 해요. (손자가) 요새는 때리지는 않아요. 욕만 하고 저렇게 살림살이 뚜드려 부수긴 해도 때리지만 않았단 뿐이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나아지지가 않고 그때는 바로 며칠은 잘 할게 어찌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 또 그러고(72세 여성).

그런대로 또 견뎌어. 그런데 또 폭행이 와서 그때는 갈비뼈를 여러 대 다치고 다시 (쉘터에) 재입소 했어. 여기 OO과장님(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자)이 당장 신고하면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믿고 얘기(행위자)한테 인자 너 한번만 더 그러면 당장 경찰서 연결 해본다라고 했더니 손 깃은 조금 덜해(67세 여성).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식이 어느 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행패를 부릴지 그걸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언제 와서 그 야단을 칠라는지 그게 문제야 지금. 지난 번 그렇게 가고 반 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언제 와서는 행패 부릴지 몰라 불안해(79세 남성).

#### 4. 외부 개입은 심정적 의지는 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

참여노인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도움 받을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재학대 발생 시 자신 재신고율이 높은 이유이다. 첫 신고·접수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감추고 도움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개입의 경험이 없던 이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생소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것을 이제 공적인 일로 다루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피학대 노인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심정적 의지가 된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된다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정성을 느낀 참여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연다. 단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여러 번에 걸친 안부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꺼내 놓는다. 행위자와 분리 의사가 없다고 했었던 76세 여성 노인은 쉘터에 머물며 타인이 자신을 돌봐주는 경험을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 노인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주로 피학대 노인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개별 상담 외에 집단 상담을 받는 참여 노인도 있었다. 주 1회 집단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67세 참여자는 자식에게 학대 받는 사람들이 자신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에 크게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학대 인식 교육 및 재학대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시도는 불발로 그치고 행위자에게

경고 조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행위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위험적인 학대를 피하여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통 삼 주 정도 머물 수 있다고 한다. 쉼터에 머물면서 심신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본 연구 참여자 중 쉼터를 이용한 여섯 명의 노인들은 폭력의 상처가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과 행위자가 걱정되어 예정보다 일찍 퇴소하였다. 피학대 노인과 행위자가 함께 거주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행위자와의 거주지 분리가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거센 폭력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피학대 노인들에게는 행위자 걱정을 하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이다. 또는 피해 노인이 행위자와 거주 분리를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신을 위해 애써 주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갖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행위자 처벌이 아닌 치료를 원한다. 대부분의 피해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학대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에 우선하여 학대행위자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학대행위자들에게 부양에 대한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피학대 노인들은 학대행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바라며, 그런 측면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참여자들은 행위자의 알코올 의존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강제적 치료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알코올 전문 병원의 입원 치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참여 노인들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한 두 차례 알코올 전문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지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 피학대 노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강제 입원치료를 결정했었는데 치료 효과는 미비할 뿐 아니라 퇴원 후 행위자의 폭력이 보복적 성격을 띠며 더욱 거세졌던 것이다.

폭력 근절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 측면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여자들은 뒤늦게라도 외부의 개입이 반갑지만, 그 이상의 것,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까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들은 전적으로 외부 개입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바라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참여자들은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행위자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피학대 노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행위자에게 강력한 경고와 처벌 또는 경제적 갈등의 증재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현 법·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는 술 먹고 집 부수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질러도 안 잡아가세요. 경찰들이 문 앞에 와서 구경만 하고 안 잡아가세요. 내 말이라도 속 시원히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 지금은 여기 센터서 나를 살렸지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런 걸 고쳐주고 봐 주고 이렇게 속상한데 여기 타지에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좀 풀려(82세 여성).

이렇게 선생님(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지칭) 오면 자식 같고, 맘이 편하. 이렇게 대화 하기도 좀 좋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니깐 편하. 솔직히 얘기가 참에 쉽지 않았는데. 저기 OO선생은 쉽게 얘기해서 인제 노인보호를 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이고 그렇게 때문에 말하기 곤란한 것도 말할 수 있고(75세 여성).

여기 선생님도 애써주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아들이 (유치장에서) 풀려나면 지가 갈 데 없는데 어디로 가요? 정말 따로 살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긴 한데 아들이 갈 데가 없으니(76세 여성).

참 어렵게 병원에 보냈어. 그런데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어. 거기선 술만 안 마시면 착 하다고 한테. 그리고 얼마 있다 나와. 한동안 나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답답해(75세 여성).

그것도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법이라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두는 거 싫고 참 분하고 원 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접근금지 뭐가 그것도 소용없어요. 왜 법이 이런 거 하나 못잡니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73세 여성).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일수록 반복적인 학대 위험에 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달리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반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었다. 아직 부양 욕구가 높지 않은 만큼, 현재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학대의 경험은 이들의 부양 욕구가 높아질 때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학대 발생

및 유지의 맥락을 들여다 본 만큼, 본 연구 결과에 노인학대 재발생 문제에 관한 학대 행위자 또는 다른 가족원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반복적인 학대 발생에 대한 경험은 주로 아들 행위자에 의해 학대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경험이다. 피학대 노인과 행위자의 관계가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경험일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반복적인 학대의 경우 다른 행위자 유형보다 아들 행위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Klein et al., 2008). 우리나라 노인학대 현황을 대표하는 자료에서도 아들 행위자에 의한 학대는 신규 신고 시에 전체의 39.3%이나 재신고의 경우에는 55.9%로 나타났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그러나 점차 딸 또는 가족 외 행위자(예를 들어, 시설에서의 학대)에 의한 학대 신고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는 노인학대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관련 연구들과 달리 피학대 노인의 학대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약한 그룹 중에서도 취약한 노인들로 알려진 학대 피해자들이지만, 이들의 경험은 취약함 이상의 것이다.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참여자들은 불안과 우울,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소극적이거나 학대 ‘피해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Donovan & Hester, 2010).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기 위한 자신만의 내러티브가 있으며, 곳곳이 버티며 살아내려고 한다. 행위자를 돌볼 사람이 자기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이들은 생활력 또는 생존의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자기 희생적 성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Zink et al., 2003). 어쨌든 참여자들에게는 곳곳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이들은 그것을 의지 삼아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러한 회복탄력적인 특성이 학대 재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위자가 음주 문제와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경우, 자신이 행위자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돌봄 제공처라는 피학대 노인의 믿음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고난을 통해 발전 시킨 대처와 극복 방식이 노인 자신에게는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했을지 몰라도 폭력적인 관계 안에서 행위자의 의존을 부추기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노인학대 재발생 사례의 모습은 여러 세대가 얽혀 있는 가족폭력의 문제이자,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과 지지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며, 노년층의 부양 필요성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사례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정 내 학대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노인학대는 반복적 특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피해 노인 가정의 전 생애에 걸쳐 축적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또는 뒤늦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육십 년이 넘는 폭력을 당해 온 참여자부터 사십 년간 아들의 폭행을 견뎌 온 참여자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삶의 일부처럼 되어 버린 폭력이 가족 울타리 밖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들에서처럼(장수미·김주현, 2005), 대부분 피학대 노인이 견딜 수 있는 폭력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는 것은 열려진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행해진 폭력이란 점에서 노인학대라는 테두리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반복적인 학대 경험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수면 위로 드러난 노인학대는 켜켜이 얽혀 있는 각 가정의 문제들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명의 피해자와 한 명의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학대행위자를 흑백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노인 피해자의 욕구 파악 또한 쉽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 3자에게 학대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가족원에게는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일 수 있다. 자신보다 약자인 가족원에게 화풀이식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족의 역사가 허용한 것일 수도 있다. 노인학대는 폭력이 대물림되면서 여러 명의 가족원, 또는 가족 전체가 관련되어 있고 보통 강한 애착 관계,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Dovovan & Hester, 2010; Payne, 2002; Walsh et al., 2007). 가족 간 갈등과 역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김미혜·권금주, 2008), 성인 애착 개념을 가지고 노인학대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Daniel & Bowes, 2011). 노인학대에 개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창고를 붙이는 차원의 개입이 아닌, 상처가 왜 그렇게 뚫은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자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입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취약한 노인이지만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노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오랜 폭력을 겪은 사람의 자기

결정이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Bergeron, 2006). 생애주기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와 실무자의 세대 간 차이에 따라 아무래도 학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이다. 전통적인 가정관과 성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노인과 현대적인 교육과 서구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의 실무자는 개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가정사 문제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당혹함과 불편함을 가지면서도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그런 경험이 없는 실무자는 학대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폭력, 그리고 외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의 시절을 겪어 온 노인들에게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그리고 본인이 재신고를 하는 것만도 큰 변화라고 봐야 한다. 제도와 서비스가 있다고 그것을 노인들이 그대로 이해하고 이용할 거라고 전제하는 것은 제공자 측의 오류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피학대 노인들이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학대라기보다는 화풀이식 폭력 또는 괴롭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행위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자의 의식주를 돌보는 입장에 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자신들이 학대를 받는다고기보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힘의 부재로 또는 힘의 역전으로 학대를 당하는 취약한 노인이라고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 폭력을 경험하는 개개인이 그 상황을 항상 학대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자가 문제로 보는 걸 노인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Douglas, 2005).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피학대 노인들의 마음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자기비난, 그리고 분노와 불안감, 행위자에 대한 격정이 교차하는 상태이다. 노인의 이러한 복잡한 심정을 읽지 못하면 Harbison과 동료들(2012)처럼 노인들을 노인학대 문제해결의 주요 장벽으로 여길 수 있다. 가족 내 관계의 애매모호함, 양가감정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모순, 그리고 피학대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이해해야 피학대 노인을 대하는 실무자의 태도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의도와 정서적·관계적 패러독스를 사정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Begle et al., 2011; Biggs & Haapla, 2010).

그렇다면, 피학대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폭력과 학대가 멈추길 바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어렵게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대 재발생 시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처럼, 이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외부의 기관을 위기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인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게도 필요한 도움이 주어지길 바란다(Nerenberg, 2007). 피학대 노인들은 공적·비공적인 도움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자신의 대처능력이 좋아지길 바란다(Beaulaurier et al., 2005). 이들은 또한 정서적 지지와 옹호, 그리고 정보를 필요로 한다(Hightower et al., 2006). 여기서 정보란 학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활용가능한 자원, 그리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탄생은 인구 고령화, 가족기능 및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사회가 나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향할 수 있는 최선의 개입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부양부담에 따른 학대 발생 이론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 노인보호 체계는 무능력한(incapacitated)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일한다. 현 노인보호 체계는 신체적 허약, 매끄럽지 않은 의사소통 등 피학대자의 취약함을 근거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하게 이분화하고,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Bergeron, 2001). 현재 노인보호 체계가 학대 발생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노인학대 관련 법이 학대를 의존의 결과라고 추정하고 관계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Anetzberger, 2005; Daniel & Bowes, 2010). 최근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며 노인학대의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인구 고령화 문제, 가정폭력, 성평등, 그리고 인권의 관점을 반영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Biggs & Haapala, 2010; Killick & Taylor, 2009). 우리나라 노인보호체계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우리 사회 반복적인 노인학대 발생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사정이 필요하다. 재발생 사례의 특성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제공되는 실천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목표로서 학대가 잠잠해

지거나 학대 수위가 낮아지는 것 이상을 바라기는 어렵다. 연구 참여 피학대 노인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심과 지지에 정서적 의지를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경우 노인학대 재발생은 행위자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재학대 발생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피해자 중심의 기관으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의 음주문제 등에 별다른 개입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 재발생에 크나큰 위험요인인 학대행위자의 문제를 알고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알코올 문제에 의한 학대재발 경우는 잘못된 인식 및 개입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노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겪게 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은 피해자 위주의 상담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빈곤과 실업, 음주와 정신건강 문제들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노인학대 발생은 많은 부분 (조)부모의 '퍼주기식' 양육방식이 의도치 않게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음주문제에 너그럽고, 강박한 삶의 어려움을 세대 간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에 무더진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발생 후에 국한한 개입에서 나아가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노인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유진은 미국 Loyola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상담, 공동생활주거, 질적 연구방법론이며, 현재 노인공동생활주거와 노인학대 현상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yjkim@knu.ac.kr)

## 참고문헌

- 고보선(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pp.91-121.
- 고정미(2010). 여성노인에서 학대 시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간호학회지*, 16(3), pp.245-254.
- 국가인권위원회(2002).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한국노인의 전화.
- 김기련, 김명희, 조명옥(2006).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 *성인간호학회지*, 18(3), pp.405-415.
- 김미혜, 권금주(2008).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3), pp.403-424.
- 김영경, 김영혜, 양진향, 유연자, 태영숙(2004). 한국 여성 노인의 학대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 5(1), pp.9-21.
- 김지아(2004).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학대받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서인균, 고민석(2011).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1(1), pp.127-157.
- 송영민(2003). 피학대 여성 노인의 의존성에 관한 생애사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3, pp.85-120.
- 우국희(2002). 노인학대의 의미와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의 인식연구: 질적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pp.109-129.
- 이현주(2013).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 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29(3), pp.409-430.
- 장수미, 김주현(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pp.127-160.
- 조애저(2008). 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9, pp.16-29.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4).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한혜경(2006). 노인복지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적합성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노년학*, 26(4), pp.767-783.

- Aciero, R. (2003). Elder mistreatment: epidemiological assessment. In R. J. Bonnie & R. B. Wallace (Eds.),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pp.261-302).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cs Press.
- Alon, S., Berg-Warman, A. (2014). Treatment and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 where knowledge and practice meet. A model for intervention to prevent and treat elder abuse in Israe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6, pp.150-171.
- Anetzberger, G. A. (2005). The reality of elder abuse. *Clinical Gerontology*, 28(1/2), pp.1-25.
- Beaulaurier, R., & Seff, L. (2005). Internal barriers to help seeking for middle-aged and older women who experi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7(3), pp.53-74.
- Bergeron, L. R. (2006). Self-determination and elder abuse: do we know enough?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6(3-4), pp.81-102.
- Bergeron, L. R. (2002). Family preservation: an unidentified approach in elder abuse protection. *Families in Society*, 83(5/6), pp.547-556.
- Bergeron, L. R. (2001). An elder abuse case study: caregiver stress or domestic violence? You decid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4(4), pp.47-63.
- Biggs, S., Haapala, I. (2010). Theoretical development and elder mistreatment: spreading awareness and conceptual complexity in examining the management of socio-emotional boundaries. *Ageing International*, 35, pp.171-184.
- Bonnie, R., Wallace, R. (2003).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Braun, V.,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pp.77-101.
- Daniel, B., Bowes, A. (2011). Re-thinking harm and abuse: insights from a lifesp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1(5), pp.820-836.

- Doe, S. S., Han, H. K., McCaslin, R. (2009). Cultural and ethical issues in Korea's recent elder abuse reporting system.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 pp.170-185.
- Donovan, C., Hester, M. (2010). I hate the word "Victim": an exploration of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in same sex relationships. *Social Policy and Society*, 9(2), pp.279-289.
- Douglas, H. (2005). The development of practice theory in adult protection intervention. *The Journal of Adult Protection*, 7(1), pp.32-45.
- Dow, B., Joosten, M. (2012). Understanding elder abuse: a social rights perspectiv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6), pp.853-855.
- Duffy, A., Momirov, J. (1997). *Family violence: A Canadian introduction*. Toronto, ON: James Lorimer & Company.
- Erlingsson, C. L. (2007). Searching for elder abuse: a systematic review of database citation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9, pp.59-78.
- Finfgeld-Connett, D. (2013).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older women: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 pp.1-20.
- Harbison, J., Coughlan, S., Beaulieu, M., Karabanow, J., Vanderplaat, M., Wildeman, S., Wexler, E. (2012). Understanding "elder abuse and neglect": a critique of assumptions underpinning responses to the mistreatment and neglect of older peopl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4, pp.88-103.
- Hightower, J., Smith, M. J., Hightower, H. C. (2006). Hearing the voices of abused older wom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6(3/4), pp.205-227.
- Hooyman, N. R., Kiyak, H. A. (198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MA: Allyn and Bacon.
- Killick, C., Taylor, B. J. (2009). Professional decision making on elder abuse: systematic narrative review.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 pp.211-238.
- Klein, A., Tobin, T., Salomon, A., Dubois, J. (2008). *A Statewide Profile of Abuse of Older Women and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Sudbury, MA: Advocates for Human Potential.

- Lachs, M. S., Berman, J. (2011). *Under the radar: New York State elder abuse prevalence study*. Retrieved October 15, 2014, from <http://www.lifespanroch.org/documents/UndertheRadar051211>
- Lafferty, A., Treacy, M. P., Fealy, G. (2013). The support experiences of older people who have been abused in Ireland. *Journal of Adult Protection*, 15(6), pp.290-300.
- Lazenbatt, A., Devaney, J., Gildea, A. (2013). Older women living and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Community Practitioner*, 86(12), pp.28-32.
- Lee, Y-S., Moon, A., Gomez, C. (2014). Elder mistreatment, culture, and help-seeking: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older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6, pp.244-269.
-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sbury Park: Sage.
- Mowlam, A., Tennant, R., Dixon, J., McCreddie, C. (2007). *UK study of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qualitative findings*. London: King's College London and the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Mukherjee, D. (2011).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elder abuse reporting system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5, pp.517-531.
- Nerenberg, L. (2007). *Elder abuse prevention: emerging trends and promising strategies*. New York, NY: Springer.
- Norris, D., Fancey, P. (2008). *Family violence: Applying lessons learned to elder abuse*. Halifax, Nova Scotia: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 Norris, D., Fancey, P., Power, E., Ross, P. (2013). The critical-ecological framework: advancing knowledge, practice, and policy on older adult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5, pp.40-55.
- O'Brien, M., Begley, E., Anand, J. C., Killick, C., Taylor, B. J. (2011). *A Total Indifference to our Dignity: Older People's Understandings of Elder Abuse*. Dublin: Age Action Ireland.
- Payne, B. K. (2002).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elder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pp.535-547.
- Patton, Q. M.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sbury Park: Sage.

- Riddell, T., Ford-Gilboe, M., Leipert, B. (2009). Strategies used by rural women to stop, avoid, or escape from intimate partner violenc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0(1-2), pp.134-159.
- Simon, M. (1992). *An exploratory study of adult protective services programs' repeat elder abuse client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9205).
- Spangler, D., Brandl, B. (2007). Abuse in later life: power and control dynamics and a victim-centered respons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12(6), pp.322-331.
- Spencer, C., Soden, A. (2007). A softly greying nation: Law, ageing and policy in Canada. *Journal of International Aging Law & Policy*, 2, pp.1-32.
- Teaster, P. B., L., Nerenberg, K. L., Stansbury, K. L. (2003). A National Look at Elder Abuse Multidisciplinary Team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5(3-4), pp.91-107.
- Walsh, C. A., Ploeg, J., Lohfeld, L., Home, J., MacMillan, H., Lai, D. (2007).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Interconnections among forms of abuse as described by marginalized Canadian elders and their care-giv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 pp.491-514.
- WHO/INPEA (2002). *Missing Voices: Views of Older Persons on Elder Abuse*. Geneva: World Health Organisation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 Wolf, R. S., Pillemer, K. (2000). Elder abuse and case outcom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 pp.203-220.
- Zink, T., Jacobson, J., Pabst, S., Regan, S., Fisher, B. (2006). A lifetim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ping strategies of older women. *Journal of Intimate Violence*, 21, pp.634-651.
- Zink, T., Regan, S., Jacobson, C. J., Pabst, S. N. (2003). Cohort, period and aging effects: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women's reasons for remaining in abusive relationships. *Violence Against Women*, 9, pp.1429-1441.

#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bused Older Adults Regarding Abuse Recurrence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Kim, Yuj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In many cases, elder abuse occurs persistently or regularly even after social interventions have been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who had been repeatedly abused in terms of how they experienced the abuse situation and intervention provided by adult protective services. Using thematic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14 abused older adults, case records,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Four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being anxious and fearful and suffering from exploitation and disconnected family relationships out of life-long family violence, ② persevering in life with one's own coping method of dealing with violence, ③ undergoing a cycle of repeated abuse occurrence and re-report, ④ emotionally depending on external interventions but less expecting for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elder abuse recurrence are discussed.

---

**Keywords:** Elder Abuse, Elder Abuse Recurrence, Repeated Reporting of Elder Abuse, Qualitative Study, Thematic Analysis